

2026년 8월 26일

골프존홀딩스 주식회사 이사회 귀중
(KOSDAQ: 1214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수신: 장성원, 박영선, 김성한, 최태원, 정찬수, 김명진 이사님
참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이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제목: 2026년 8월 25일자 귀사 의견표명서에 관하여 — 이사회의 직무 방기

본인은 골프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골프존홀딩스' 또는 '회사')의 주식 48,504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로서, 현재 최대주주 측이 진행 중인 주당 6,700원의 소수주주 지분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이 서한을 드립니다.

이번 공개매수와, 그에 수반된 이른바 '적법절차'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건전한 지배구조, 이사의 충실의무, 그리고 소수주주 권리라는 관념 자체를 조롱하는 것이며, 한국 자본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접촉하는 모든 주주에게 — 국내외를 불문하고 — 동일하게 응하지 말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만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의 비상장 소수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채 한국 법원에서 그 가격을 다루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거래를 지켜보는 모든 투자자가 이미 사석에서 하고 있는 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식적인 거래와 짜맞춘 절차야말로 한국을 국제 자본시장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지배주주 일가가 타인의 자산을 그 가치의 일부에 불과한 값으로 가져가는 거래를, 독립적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현재 주주들 앞에 놓인 이번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위원회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상장기업에 매겨져 온 모든 할인은, 바로 어제 귀사가 제출한 것과 같은 문서를 통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지배주주 일가는 2026년 4월 8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소요자금의 76%를 차입으로 조달한 상태에서, 남은 소수주주 전원의 지분을 회사가 스스로 공시한 장부가액의 34.7%, 그리고 보수적으로 조정한 순자산가치의 약 21% 수준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의 핵심 자산에 대하여 기업가치 약 2조원 수준으로 보도되는 경쟁적 매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사회는 이를 보고서 찬성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이사회가 승인한 상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제값의 35% 수준에 팔라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 집의 방 절반은 국제 입찰자들이 줄을 선 가운데 장부가를 훌쩍 넘는 가격에 따로 경매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가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언급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조언하는 중개인이, 바로 그 방들을 파는 경매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가 선임한 감정인은 이미 자기 지분을 매수인에게 팔아치운 상태입니다. 제정신인 이사회라면 이런 거래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1. 이사회는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거래에는 찬성했습니다

귀 이사회는 '본 공개매수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같은 문장에서 '주주들의 응모 여부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고, 나아가 주주들에게 '공개매수 가격이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기업가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이사회가 이토록 공색한 설명을 지어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습니다. 귀 이사회는 보호할 의무를 지는 소수주주들에게, 스스로 인정하기로 그들의 주식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내지 않는 가격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 이사회는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아예 없습니다. 귀사의 법률자문이 제시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은 그 가격이 '회사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그 손해가 문제 삼을 만큼 심각한지를 따지는 기준일 뿐이며, 공정성 심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공정성)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선진 자본시장의 현직 이사회가 적법절차의 기준으로 공정성이 아니라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주주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를 감내시킬 수 있는가'를 채택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지지하는 귀 이사회만의 유일한 적극적 근거는, 6,700원이 종전 상장폐지 사례 19건의 평균 21.0%에 대비하여 57.5%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도 부끄러워할 순환논법입니다. 귀 이사회는 지배주주 일가가 만든 지배구조, 그 일가가 결정한 자본배분, 그리고 소각하지 않은 자기주식이 함께 눌러 놓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산정한 뒤, 그것을 한국의 소수주주들이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다른 19건의 거래와 견주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일가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주가를 억눌러 놓고, 다시 그 주가를 나머지 주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가치의 척도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2. 이른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였습니다

귀사의 의견표명서 3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인 정찬수 이사가 2026년 6월 29일자 공개매수신고서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문서는 그가 1차 공개매수 당시에는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견표명서 제출일 현재 보유 주식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그 주식이 공개매수에 응모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6,700원이라는 가격이 이에 응하지 않은 주주들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의 위원장으로 귀 이사회가 선임한 인물이, 정작 본인은 그 6,700원을 받아들였고 오늘 현재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귀사가 작성한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표에는 김명진 이사의 주요경력에 '前, NH투자증권 IB 사업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i) 공개매수자의 공개매수 사무취급기관이고, (ii) 이번 공개매수 자금의 76%에 해당하는 803억원의 대주이며, (iii)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원일 씨가 보유한 주식 1,857만 주 전부에 대하여 약 1,250억원을 담보하는 질권자이기도 합니다. 그 담보계약의 공시 지연으로 회사는 2026년 7월 2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습니다. 귀사의 의견표명서는 이러한 근접성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진 이사가 언제 NH투자증권을 떠났는지, 그것이 최근 5년 이내인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덧붙여, 귀사의 감사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동일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적 모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시하는 기구와 감시받는 기구가 동일하고, 그 위원장은 매수인과 나란히 특별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제542조의8, 그리고 지배주주로부터 — 단순히 경영진으로부터가 아니라 — 독립된 위원회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2026년 2월 25일자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구성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3. 귀사의 평가기관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거부한 자산의 매도인 측 자문사입니다

귀 이사회는 2026년 7월 9일 삼정KPMG를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재무자문사로 선임하면서, 이를 '회사 및 그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표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회사로부터 독립',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정작 실제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지점, 즉 공개매수자, 지배주주 일가, 그리고 MBK파트너스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 누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정KPMG는 모건스탠리와 함께 골프존카운티 매각에 관한 MBK파트너스 측 매각주관사입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같은 2026년 7월 29일에 다음 두 가지 일이 함께 있었습니다. 삼정KPMG는 귀사 특별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하면서 골프존카운티 매각이 '평가금액에 반영할 만큼 충분히 진행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경제는 해당 매각 절차가 약 2조원의 기업가치 수준에서 진행 중이며, 복수의 해외 재무적투자자와 국내 전략적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MBK가 인수 수요에 맞추어 분할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결국 골프존카운티 매각 절차의 입찰 정보를 쥐고 있는 바로 그 회계법인인, 귀사 특별위원회에는 그 입찰 상황이 반영할 만큼 무르익지 않았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7월 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바로 이 쟁점에 관한 우려를 스스로 회의록에 남겨 놓고도,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법인 내부에 어떠한 정보차단 장치가 있든, 이는 세계 어느 시장의 주주도 용납하지 않을 이해상충이며,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법률자문사에 관하여는 독립성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4. 귀사의 공시자료만으로도 주당 약 11,800원의 추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 이사회는 7개 사업부문에 대하여 사업부문별 합산평가(SOTP), 유사거래 비교법,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고도 그 결과에서 단 하나의 수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가치도, 주당 평가범위도, 부문별 가치도, 할인율도, 비교대상 기업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귀사의 의견표명서는 물론 두 차례의 공개매수신고서 어디에도 골프존카운티 — 해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 그 자체인 자산 — 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확인하는 데 삼정KPMG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래 조정 항목 중 두 가지는 귀사가 감사받아 공시한 자료에서 그대로 도출한 것입니다.

주당 순자산가치(2026년 반기 기준: 자기자본 7,459억원 ÷ 38,624,742주)	19,310원
가산: 골프존카운티 지분을 약 4,000억원으로 반영(지분법 장부가액 1,958억원 대비)	+5,300원
가산: 투자부동산을 회사가 공시한 감정평가액 5,675억원으로 반영(장부가액 3,160억원 대비)	+6,500원
조정 주당 순자산가치	약 31,100원
공개매수 가격	6,700원
조정 순자산가치 대비 공개매수 가격	21.5%
장부가액 대비 공개매수 가격	34.7%

6,700원이라는 가격에서 공개매수자는 회사 지분 전체의 가치를 2,588억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카운티 지분은 과거 지분법 장부가액만으로도 1,958억원입니다. 별도기준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은 664억원입니다. 이 두 항목만 합쳐도 2,622억원으로, 귀 이사회가 찬성한 이번 공개매수가 회사 전체에 매기고 있는 가치를 이미 넘어섭니다. 이는 곧 골프존 지분, 골프존커머스, 골프장과 본사 부동산,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모든 자산이 사실상 공짜보다 못한 값에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6,700원이 공정하다는 것이 귀 이사회의 입장이라면, 그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각 사업부문에 부여한 가치, 골프존카운티 지분과 투자부동산에 부여한 가치, 비교대상 기업군,

그리고 적용한 할인율을 모두 공개하십시오. 주식을 팔라는 요구를 받는 주주라면, 매수하는 일가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 이사회는 결론에 이르게 한 모든 근거를 감춘 채 결론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주주들 앞에 놓인 이번 공개매수에 대하여, 이사회는 절차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변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8월 25일자 귀사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2차 공개매수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조건이 1차와 동일하고 '골프존카운티 매각 절차의 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가격은 동일했지만, 사실관계는 분명히, 그리고 중대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1차 공개매수 종료 이후, 소수주주들은 매수 예정 주식의 37%를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1차 공개매수 과정의 모든 절차적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가격에 대한 명백히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또한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2차 공개매수 개시 이후 주가는 매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공개매수 가격을 상회하였습니다. 즉 시장은 귀사의 가치를 귀 이사회가 찬성한 가격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그것이 재검토할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골프존카운티 절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관하여도 말씀드립니다. 귀 이사회는 그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주주들에게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른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과 그에 수반되는 통지수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이사회는 스스로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사실, 그것도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자문사가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독립적 심사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후의 모든 절차 —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이든 — 의 기준가격을 확정하게 될 이번 공개매수가, 특별위원회도 없이, 새로운 가치평가도 없이, 새로운 법률검토도 없이, 그리고 만료 8일 전에 공표된 의견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나아가 귀 이사회는 향후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6,700원과 '동등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검증한 적 없는 숫자를 영구적인 상한으로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귀 이사회는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6. 시점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남길 것

한국에 의무공개매수 제도나 이른바 put-up-or-shut-up 규정이 없고, 따라서 귀 이사회가 이번 공개매수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귀 이사회에 요구되었던 것은 이를 저지하는 일이 아니라, 주주가 부당하게 혈값에 지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충실의무를 이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귀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응모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존카운티 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를 공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절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산이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가치를 소수주주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장치를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었습니다. 귀 이사회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 대하여 직접 미치도록 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지배주주가 우월한 정보를 이용하여 저평가 국면에 맞추어 공개매수 시점을 정하는 것을 전형적인 위험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며, 귀 이사회가 어째서 이를 방관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지 본인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미칠 더 넓은 영향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막대한 정치적 자원을 들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세계에 설명해 왔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법 개정, 바로 이러한 사안을 겨냥해 마련된 법무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승계를 앞둔

지배주주 일가의 주가 억누르기를 막기 위한 입법을 직접 촉구한 대통령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존홀딩스가 등장했습니다. 핵심 자산의 매각 절차가 한창인 와중에 순자산가치의 5분의 1 수준에 소수주주를 몰아내는 일가의 특수목적법인, 매수인의 특별관계자로 분류되었고 스스로 보유주식을 처분한 인물이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 스스로 평가하기를 거부한 자산의 매도인에게 고용된 평가기관, 그리고 주주들이 이익을 제기하자마자 자신의 심사 절차를 해산해 버린 이사회가 그것입니다.

이 거래가 지금의 구조대로 완결된다면, 한국의 개혁이 진짜인지 본인에게 물어 왔던 모든 해외 자산배분 담당자들은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답입니다. **이 수준의 지배구조 연극이 어울리는 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경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나나 공화국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앞으로 수년간 한국 자본시장에 메아리로 남을 것입니다.

7. 본인의 요구사항

이번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9월 2일 이전, 그리고 늦어도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시의 방법에 의하여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 **이번 공개매수에 대한 이사회와 찬성 의견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다음 세 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를 이행하십시오. (a) 이사회가 실제로 검토하였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공개매수자에게 가격의 재검토와 상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b) 골프존카운티 매각 절차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매수인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알려질 때까지 상장폐지·소수주주 축출·주식교환을 향한 어떠한 후속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절차의 종단을 요구하거나, (c) 주주들에게 응모하지 말 것을 권고하십시오. 가격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거래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은,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의무를 지는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가격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주주들에게 찬성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2. **가치평가 결과를 전부 공개하십시오.** 삼정KPMG가 산출한 기업가치와 주당 평가범위, 7개 사업부문 각각에 부여한 가치, 골프존카운티 지분과 투자부동산에 부여한 가치, 비교대상 기업군, 그리고 적용한 할인율을 모두 공개하십시오.
3. **이해상충 관계를 빠짐없이 공개하십시오.** 삼정KPMG가 골프존카운티 매각과 관련하여 MBK파트너스를 자문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십시오. 두 외부자문사가 최근 5년간 공개매수자, 원앤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홀딩스, 김원일, 김영찬, MBK파트너스 또는 골프존그룹 소속 법인과 수행한 모든 용역과 그 보수를 밝히십시오. 김명진 이사가 NH투자증권을 떠난 시점과 잔존하는 관계 유무를 밝히십시오. 정찬수 이사가 1차 공개매수에 보유주식을 응모하였는지, 응모하였다면 그 일자와 가격을 밝히십시오.
4. **이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이사 6인 각각의 2026년 6월 29일 현재 및 현재 시점의 보유주식 수와 그 사이의 모든 처분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주주들은 이 사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에 자신의 재산을 얼마나 걸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기록만 보면 그 금액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골프존카운티에 관하여 이사회가 알고 있는 바를 공개하십시오.** 매각 절차의 진행 상황, 주주간 계약에 따라 수령한 통지, 그리고 보도된 평가금액이 회사의 31.58% 실질 지분에 대하여 의미하는 가치를 공개하십시오.
6. **향후의 소수주주 축출 또는 주식교환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공개매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사, 공개매수자 및 MBK파트너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문사, 공개되는 공정성 의견서, 그리고 6,700원을 기준으로 전제하지 않는 심사가 그 요건입니다.

7. **사임하십시오.** 수사(修辭)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유일하게 깨끗한 해법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주들 앞에 놓인 공개매수를 심사하자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부결시킨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하여 회사를 경영할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8. 본인의 대응 계획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은 응모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접촉하는 모든 주주에게 응모하지 말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이 거래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매도청구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진행될 경우, 소수주주의 공정가치는 매수하는 일가가 아니라 상법 제360조의25, 제360조의26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한국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할 것이며, 그 절차에서 귀사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5,675억원의 감정평가액, 2조원 규모의 골프존카운티 매각 절차, 그리고 7월 9일·27일·29일·31일에 열린 귀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모두 현출될 것입니다. 혹시 달리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하여 덧붙이자면, 이러한 권리는 국내 주주와 해외 주주에게 완전히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아울러 본인의 대응이 가격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본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다른 주주들의 권리행사도 지원할 것이며, 이는 매수가격 결정 청구와 법원의 가격결정에 그치지 않고,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한 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제기되어 있는 진정을 지원할 것이며, 한국거래소에도 별도로 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위원회가 정하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자문사가 자문하였으며, 누구에게도 공개된 바 없는 가치평가에 근거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자진 상장폐지를 한국거래소가 책임 있게 승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 서한과, 이에 대한 귀 이사회의 회신 또는 침묵을, 한국 주식을 보유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 앞에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러미 레이퍼 (Jeremy Raper) 드림